

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·GtoG교역지원센터
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
02. 3460. 7812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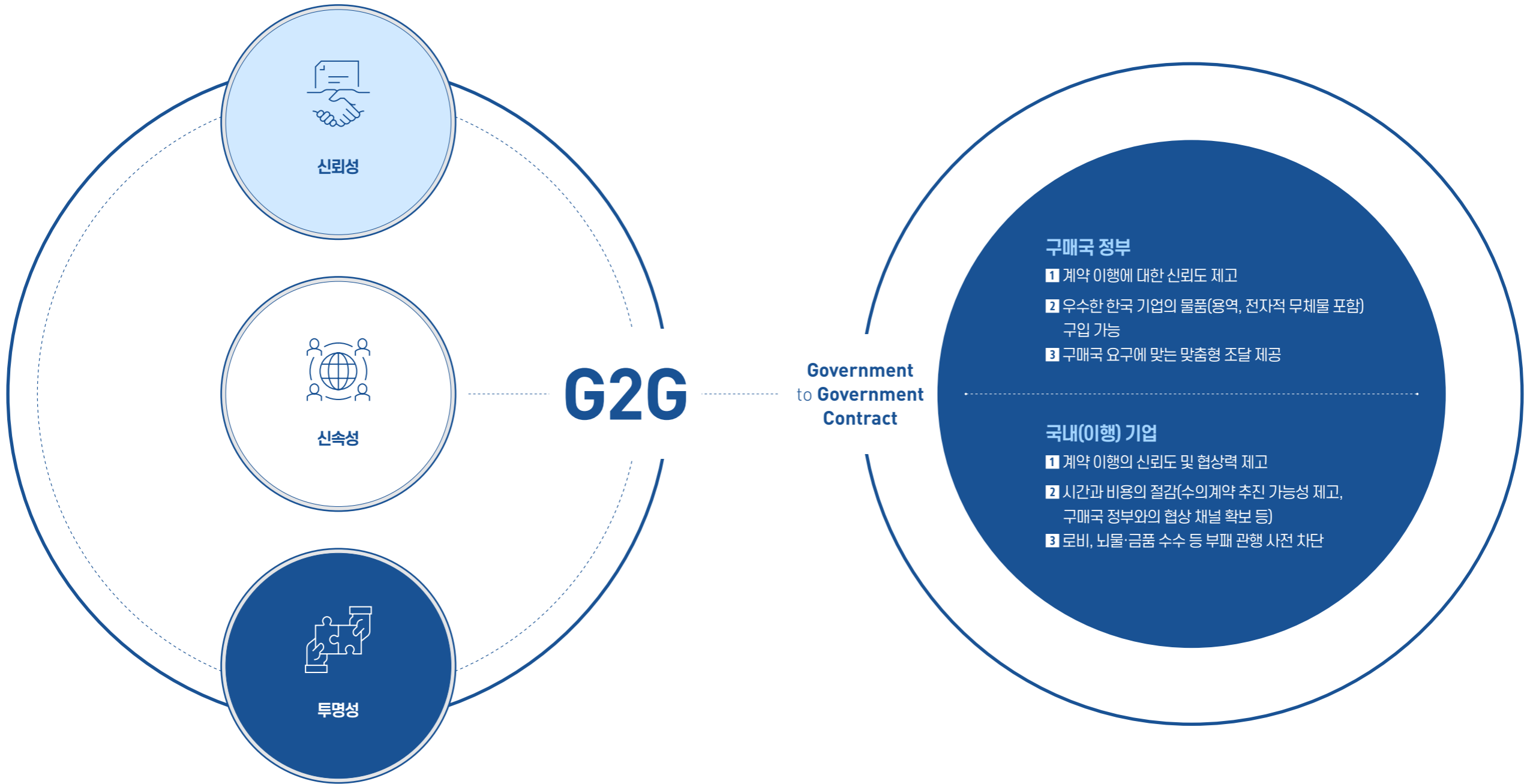
정부간 [G2G] 수출계약이란?

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,
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'KOTRA'가
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
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
물자 및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
외국 정부와 체결하는
계약을 말합니다.

Contents

- 1 정부간 [G2G] 수출계약의 이점
- 2 정부간 [G2G] 수출계약과 KOTRA
- 3 정부간 [G2G] 수출계약 주요품목
- 4 정부간 [G2G] 수출계약 절차
- 5 정부간 [G2G] 수출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
- 6 FAQ

정부간 [G2G] 수출계약의 이점



정부간[G2G] 수출계약과 KOTRA

KOTRA는 대외무역법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명시된 **정부간(G2G) 수출계약 전담기관**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구매국 정부와 정부간(G2G)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. KOTRA G2G 교역지원센터,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간 수출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[대외무역법 제32조의3]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

[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1항 8호 및 9호]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

[대외무역법 제32조3 제2항]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

정부간[G2G] 수출계약 주요품목

물품,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(일반물자, 방산물자)

- 

특수 목적차량 및 운반 장비

 - 소방차, 구급차, 경찰차, 방재용 헬기 등
 - 선박, 철도차량, 크레인 등
- 

항공·우주분야

 - 구호용·방재용 헬리콥터, 항공기 등
 - 인공위성(지리관측·통신) 등
- 

ICT

 - 전자정부, 통신망, 관제 시스템(재난관리 등)
 - 온라인 교육 시스템, 교통 시스템(ITS) 등
 - 보안 및 인공위성 서비스(지리관측·통신) 등
- 

각종 인프라 및 관련 운용시스템

 - 도로 및 항만, 발전소, 공항, 철도 등 건설 사업
 - 공공시설(병원, 방송국, 경찰서 등) 건설 및 운용시스템
- 

산업시설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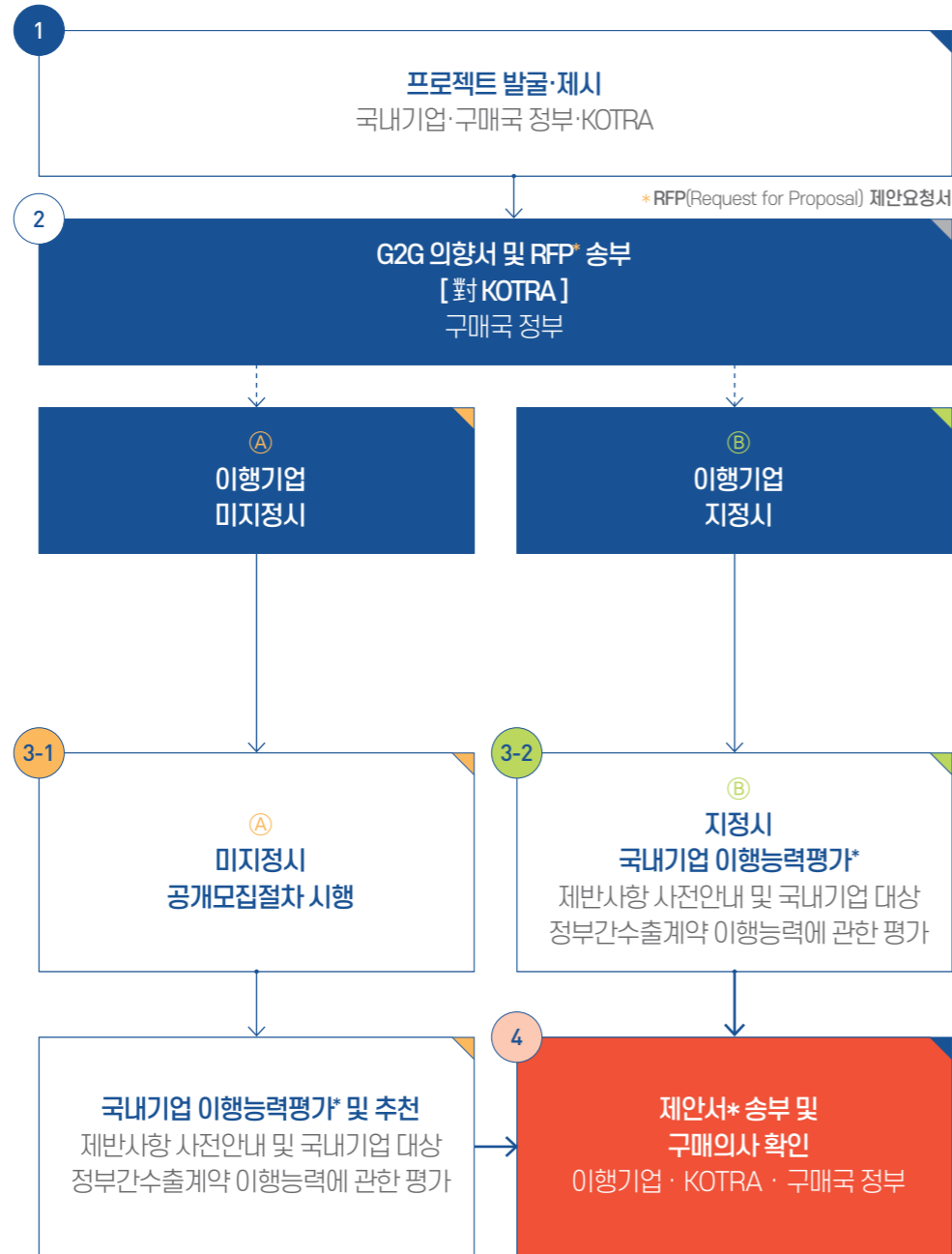
 - 제철소, 정유소 등
- 

방산물자

 -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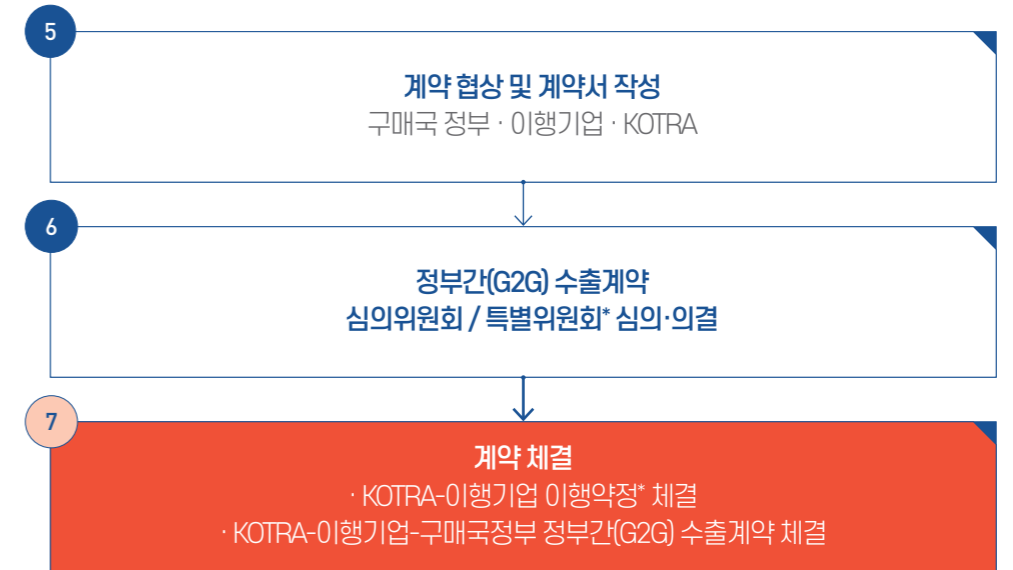
정부간[G2G] 수출계약 절차

STEP 1 프로젝트 발굴·알선



*참고1: 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관련 보고서 작성비용은 기업부담(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자문료 등, 필요 시 평가보고서 양식 제공)
*참고2: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기업 부담(제출서류 발급·번역·공증 등)

STEP 2 계약 협상·체결



*정부간 수출계약 위원회
[심의위원회] 대외무역법 제32조의 4에 따라 계약의 체결, 변경, 해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며 위원장(KOTRA사장) 등 최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
[특별위원회] 방산물자 계약의 체결, 변경 해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며 위원장(KOTRA사장)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

STEP 3 계약 이행·모니터링



*참고1: 대외무역법 제32조의5에 따라 국내기업은 보증·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해야 함
*참고2: 수출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기업부담

정부간[G2G] 수출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

정부간(G2G) 수출계약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

구매국 정부

- G2G 의향서 발송
- 제안서 심사 및 협상 대상자 선정
- 계약 협상 및 체결
- 이행기업에 계약대금 지급
- 기타 계약상 의무 이행

KOTRA

- G2G 의향서 접수, 국내기업 발굴 및 추천
- 계약 협상 및 체결
- KOTRA - 이행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
- 계약이행 모니터링 및 구매국 정부 요구사항 조정
- 기타 계약상 의무 이행

국내(이행)기업

- G2G 제안서 작성
- 계약 협상 및 체결
- KOTRA - 이행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
- 이행 보증 조치 및 계약 이행
- 구매국 정부에 수출물품 인도 및 계약대금 수령
- 기타 계약상 의무 이행

FAQ

본 내용은 G2G 계약 관련, 자주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작성되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KOTRA GtoG교역지원센터/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[02-3460-7812]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▶ 정부간(G2G) 수출계약 체결 절차에서 이행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?**

구매국 정부가 이행기업을 지정하는 경우 (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2)를 제외하고,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**공정한 방법으로 국내기업을 선정하여 구매국 정부에 추천**합니다.
- ▶ 정부간 수출계약과 정부간 수출중개의 차이점은 뭔가요?**

정부간 수출중개란 판매국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판매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할 국내업체가 구매국 정부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. 즉, **최종 계약당사자**는 기업과 구매국 정부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**법적 책임은 기업**에게 있습니다.

반면, **정부간수출계약**은 정부 혹은 기관이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혹은 함께 계약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구매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, 정부가 정부간 수출중개 형태 보다는 **더 적극적 계약에 참여하는 형태**입니다.
- ▶ 정부간(G2G) 수출계약 사업/파트너 발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**

G2G교역지원센터 /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에서 진행되는 사절단 및 바이어 초청 행사(예 : KODAS) 등에 참가를 추천드립니다.
- ▶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의·의결하나요?**

'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, 변경,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'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- ① 정부간 수출계약의 수용여부, 국내기업의 이행능력 평가, 이행 보증 내용의 적정성 등
 - ② 계약기간·계약금액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
 - ③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
- ▶ 국내기업의 이행 보증 조치란 무엇인가요?**

이행기업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선수금의 반환, 계약 이행, 하자 보수 등에 대해 금융회사 및 보증·보험기관 등으로 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해야 합니다. (대외무역법 제 32조의 5)

이행 보증 발급기관 :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· 단, 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보증 생략이 가능합니다.